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 의약품관리과-8165호(2019.10.23.)
2. 첨부문서 바코드 인쇄 관련, 위임범위 명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협회는 관련 업체(회원사·비회원사 포함)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규정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바이오회협회장, 약학정보원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귀하, 한국병원약사회장 귀하

주무관 김형석 사무관 이종식 의약품관리과 전결 2019. 12. 30.
장 김남수

협조자

시행 의약품관리과-1003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71 팩스번호 043-719-2650 / khs1980@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